



## 주요 경영상황 공시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33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
피델리티자산운용(주)

(제10-2-2호)

감사·감사위원회 위원 증도퇴임

1. 퇴임감사 (감사위원) 내역	구 분		감사위원회 위원
	성 명		조셀린 도우 (Jocelyn Doe)
	임기	시작일	2010년 6월 28일 (최초선임일: 2009년 7월 27일)
만료일		차기 정기주총일 (2011년 6월 28일)	
2. 퇴임사유			퇴사
3. 퇴임일자			2011년 2월 10일
4. 퇴임 후 감사(감사위원) 현황	감사수 (명)	상근	-
		비상근	-
	감사위원 수(명)	사외이사	3
		비사외이사	-
5. 대규모법인여부			-
6.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			-

<기재상의 주의>

- 주1)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위원이 임기만료 외의 사유로 퇴임(중도사임 또는 해임 등)한 때 신고한다. 다만, 임기만료 전에 동일임원으로 재 선임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.
- 주2) “구분”은 상근감사, 비상근감사, 감사위원회위원 등 해당사항을 기재한다.
- 주3) “대규모법인여부”는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인 경우 기재한다.
- 주4) 상기 기재사항 외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주요사항은 “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”란에 가급적 자세하게 기재한다.
- 주5) 당해 신고내용이 지주회사(외국지주회사 포함)의 자회사(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 포함)에 대한 주요경영사항 신고의 경우 “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”란에 자회사명 및 자산총액비중(%)을 기재하되, 자산총액비중은 지주회사의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대비 지주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주식의 최근 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상 가액의 비중을 기재하고, 당해 사업연도중 편입한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의 비중을 기재한다.